



주식회사 케이코리아인용원 - 경남대학교

산학협력 가족회사 협약서

주식회사 케이코리아인용원과 경남대학교(이하 "양 기관"이라 한다)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남대학교와 가족회사의 상호 발전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양 기관의 교류 및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호협력) 양 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.

1.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 및 경영 자문, 공동연구
2. 인력, 시설 설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
3. 학생의 산업체 인턴십,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
4.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
5. 산학협력 세미나, 특강, 워크숍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6. 학생의 취업, 프로젝트 공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
7. 산업체와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8. 기타 협력이 가능한 제반 사항

제3조(비용부담) 업무협력 및 상호 공동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 공동사업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.

제4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사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. 다만,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 공개한다.

제5조(상호협력) ① 양 기관은 본 협약목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6조(협약의 해지) 본 협약은 양 기관 중 일방이 해지한 경우 자동 해지된다. 다만,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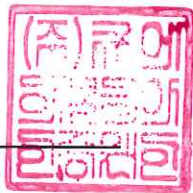
제7조(효력)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2017년 6월 19일

주식회사 케이코리아인용원

대표이사

양순정



경남대학교
총장 박재훈

